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지침

제정: 2025.06.3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회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지침은 수탁자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투자회사의 중장기 기업가치 개선과 고객·수익자의 중장기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제2조(선관의무)

유경PSG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집합투자재산의 수익자 및 기관투자일임 고객(연기금 등 의결권행사 위임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중장기 이익을 제고·보호하기 위하여 투자회사와의 상호이해와 협력관계의 토대 위에서 이 지침을 신의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한다.

제3조(기본원칙)

회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른다.

1. 회사는 고객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한다.
2. 회사는 투자 대상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여 고객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한다.
3. 회사는 투자 대상과 재무·비재무 경영 사항에 대하여 공감대 형성에 노력한다.
4. 회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에 있어 투자대상의 재무구조·경영성과 등 재무적 요소와 지배구조·경영전략·ESG 등 비재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단,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및 투자 전략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활동내용)

① 회사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수탁자 책임 활동을 할 수 있다.

1. 비공식적인 관여 활동
    - 가. 경영진과의 대화
    - 나. 경영진의 배석 없이 이사회 구성원과의 대화
    - 다. 투자회사에 대한 서면질의
    - 라. 심도 있는 판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자료 요청

2. 공식적인 관여 활동
    - 가. 공개적인 의견 표명
    - 나. 주주총회에서의 적극적인 발언과 토론
    - 다. 이사·감사 후보를 추천하는 주주제안 또는 다른 주주의 주주제안에 참여
    - 라. 주주총회 소집 청구 및 다른 주주의 청구에 참여

② 의결권 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③ 회사는 우선적으로 투자대상기업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동의 목표를 설정·지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회사는 투자회사에 대한 자본구조(배당정책, 자사주매입 등), 지배구조(임원선임 등), 사업전략(비핵심자산 매각, 신사업 추진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요소 등 재무 및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투자대상기업의 위험관리 및 중장기 성과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 외에도 서면질의 또는 자료요청, 이사회 또는 경영진과의 회의, 의견서 전달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주주관여 활동을 이행할 수 있다.

제5조(관여활동의 공시)

①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수탁자 책임 활동의 내용 및 결과를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1.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지침
2. 의결권행사에 관한 지침
3. 수탁자 책임 활동 내역(의결권 행사 내역 등)

② 공시 내용은 투자대상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및 미공개 중요정보 관리 원칙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제6조(수행조직 및 절차)

① 수탁자 책임 활동 및 이를 위한 주주관여 활동의 주체는 운용부서로서, 운용부서는 이 지침에서 정한 원칙, 범위, 절차 등을 준수하여 활동을 진행한다.

② 운용부서는 투자대상기업을 기업탐방 등 대면방식으로 점검하거나, 공시자료, 시장 정보 등을 분석하거나, 필요시 투자대상기업 경영진들과 회의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대상기업의 재무 및 비재무적 요소에 대해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③ 운용부서는 모니터링 내용을 바탕으로 비공식적 관여활동 등을 우선 수행하며, 비공식적인

관여활동 후에도 당초 의도한 고객 또는 수익자의 이익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심종목 선정과 함께 공식적인 관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수탁자 책임 활동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하거나 다른 기관투자자와 공동 대응할 수 있다.

제7조(대상 범위)

① 이 지침은 회사가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의결권행사를 위임한 투자일임재산에 한함)으로 보유하는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한다.

② 회사는 보유 지분의 규모, 투자 목적, 투자 전략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 책임 활동의 범위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내부통제)

① 회사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 투자자 상호 간 또는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회사는 수탁자 책임활동 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지 파악·평가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추어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회사의 고객 및 투자자에게 알리고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적정한 수준으로 해소되기 전까지 매매 등을 제한할 수 있다.
3. 회사는 상당한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완화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관련 계약 및 거래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하여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임직원은 이의 준수를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내규, 준법감시인이 별도로 마련하는 절차 등을 따른다.

③ 준법감시부서는 수탁자 책임 활동 시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규정 등 관련 내규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및 내부통제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실행한다.

제9조(지분 보유 수준에 따른 관여 활동)

① 회사는 보유 지분이 대량보유 보고 의무(5%) 미만인 경우에도 필요시 주주관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지분 보유 수준이 5% 미만인 경우, 회사는 비공식적인 관여활동을 우선 수행하되, 그 효

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식적인 관여활동으로 단계를 확대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지분 보유 수준에 관계없이 투자자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인 주주관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역량 강화)

회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06월 30일부터 제정·시행한다.